

서울특별시 마포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09. 2. 27.

복지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09. 2. 17. 마포구청장
- 나. 회부일자 : 2009. 2. 17.
- 다. 상정일자 : 제143회 임시회 제2차 위원회(2009. 2. 27)
상정, 심사, 원안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박영우 도시디자인과장)

가. 제안이유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법률 제8737호, 2007. 12. 21개정, 2008. 12. 31시행)의 개정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8868호. 2008.12.22시행)의 개정에 따라 옥외광고업 등록자에 대한 사후 관리기준 강화, 광고물 실명제 시행, 과태료 상한액 상향 조정 등과 관련하여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 조례로 정하고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한편, 현행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동시에 자치단체 간 통일성 유지의 필요성이 있어 행정안전부 표준 개정안 [지역활성화과-1825(2008.11.10)]을 기준하여 관련조문을 인용 보완하고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임.

나. 주요내용

- 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개선(안 제16조)

디자인서울거리 조성을 위한 사업구간에서 새로운 디자인으로 교체 설치하는 공중전화부스에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도록 추가하였고, 전주와 가로등주가 광고물 등의 표시금지 물건으로 지정되어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표시대상에서 제외

- 옥외광고업자 사후관리 강화(안 제30조)

옥외광고업 폐업事實을 현지 확인한 후에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영업소 안에 비치해야 할 장부 등을 규정하고 위반 시 안 제35조 별표 7에 의거 과태료 부과

- 광고물의 실명제 표시 시행(안 33조의 2)

고정식 광고물을 대상으로 허가 또는 신고번호, 표시시간, 제작자명을 표기한 가로5cm*세로5cm의 스티커형 인식 마크를 부착

- 위반에 대한 행정조치(안 제35조)

과태료 상한액을 300만원에서 50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하고, 옥외 광고업 사후관리 강화에 따른 의무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과태료 부과 기준 강화를 통한 영업질서 확립

- 특정구역내 광고물 등에 대한 행·재정 지원(안 제37조)

광고물 등의 정비 시범사업 등에 따른 소요예산 지원근거를 명확히 하여 재정지원에 따른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을 방지하고자 함

3. 검토보고의 요지 (한두호 전문위원)

- 안 제37조는 법제5조의 2 제2항(옥외광고물 및 관련 산업의 발전 등을 위한 종합계획)에 의한 지원계획에 따라 자체 시행계획을 수립 · 추진하여야 하는 것이며, 쾌적하고 특색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광고물 등의 정비 시범지역을 자체적으로 지정·운영하게 될 때 필요한 경우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행·재정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이는 광고물 등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각종 수수료 및 과태료 부과기준은 행정안전부의 표준개정안을 기준한 것으로서

별표 4,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허가·신고 수수료는 대체적으로 현행 수준과 같으나 교통수단이용 광고물, 선전탑, 아취광고물, 창문이용 광고물, 현수막 등의 허가·신고 수수료는 다소 인하 조정되었고, 전주, 가로등주는 광고물 등의 표시금지 물건으로 추가 지정되어 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 허가·신고 수수료 목에서 삭제되었으며, 차량탑재 영상광고물 등 특별법에 의한 광고물 허가·신고 수수료는 신설 되었음.

별표 7, 과태료 부과기준은 행정안전부 제공 표준개정안을 따르면서 과태료 부과금액은 '시·구지역'기준액으로 정하여 현행 과태료 부과금액에 60%를 상향하는 쪽으로 조정이 되었으며, 옥외 광고업자의 사후관리강화 및 광고물 실명제 시행에 따른 의무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이 신설되었음.

- 이상으로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대부분 행정안전부의 표준개정안을 충실히 따른 것으로 전국적인 통일성 유지의 필요성이 강하게 반영된 조례안으로 미관풍치와 미풍양속을 유지하고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며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나름대로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됨.

- 참고로 2008년도 옥외광고물 전수조사 결과 마포구 광고물은 총 31,443개로 가로형간판 17,647개, 세로형간판 2,007개, 돌출간판 7,812개, 옥상간판 22개, 지주이용간판 1,160개, 창문 이용광고물 2,795개이며, 2008년도 과태로 부과금액은 773건에 7,920만 4천원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 회의록 참조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기타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8. 기타 : 없음